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 지원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

내 용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, 제34조의2 및 보건복지부 「보육사업안내」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, 어린이집이나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동일 아동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영유아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개 구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중복지원(2014. 1.~2017. 6.) 여부와 중복지원자에 대한 회수 실태를 확인한 결과, 아래 [표]와 같이 동일아동에게 중복으로 지원된 총 89건 10,019,620원에 대한 회수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]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현황(2017. 8. 28. 기준)

<단위 : 건, 원>

자치구	계		보육료		양육수당	
계	89	10,019,620	53	4,819,620	36	5,200,000
동구	1	100,000	-	-	1	100,000
서구	23	2,419,190	12	1,069,190	11	1,350,000
남구	12	1,764,880	3	314,880	9	1,450,000
북구	21	1,769,140	17	1,269,140	4	500,000
광산구	32	3,966,410	21	2,166,410	11	1,800,000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양육수당 100,000원을 회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1,069,190원, 양육수당 1,350,000원을 회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314,880원, 양육수당 1,450,000원을 회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복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1,269,140원, 양육수당 500,000원을 회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

[시정]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2,166,410원, 양육수당 1,800,000원을 회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